

채굴중단 인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신청인 (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)	상호 또는 명칭	설립연월일	
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(전화번호:)	
채굴권의 표시	광구 소재지		
	등록번호	제 호 (조광권 제 호)	광업지적 제 호 지적 호
	광종명	면적	헥타르
광산명			
채굴계획인가 연월일			
중단 기간 ~			
중단 사유			

「광업법」 제42조의2제2항,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중단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(세금계산서 등을 말합니다)	수수료
작성 시 유의사항	이 신청서는 광산단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수입증지 2,000원 (뒤쪽에 붙임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